

사후관리

○ 사후관리 절차

1. 인증책임자는 의뢰자와 인증제품이 규정된 인증요건에 지속적으로 만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인증분야별 및 모델별로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요건과의 적합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인증책임자는 의뢰자의 인증표시제품이 인증요건에 지속적으로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당해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3.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뢰자가 서면으로 만료시점을 포함한 인증제품의 생산중단 보고를 한 경우, 유효기간의 범위 내에서 사후관리를 유예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의뢰자는 생산중단 보고 만료시점 전에 생산개시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4. 현장평가와 제품평가의 사후관리 주기는 최소한 유효기간 발생일로부터 1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단, 의뢰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인증책임자의 승인을 받고 유효기간으로부터 1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 조정할 수 있으나, 그 다음 사후관리 주기는 처음 설정된 기간에 따라 실시되어야 한다.
5. 인증스킴 형식별 사후관리 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형식별	사후관리 방법 및 절차	권한
Type 1a	사후관리 없음	-
Type 1b	사후관리 없음	-
Type 3	생산프로세스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고, 공장에서 생산중인 인증대상 제품에 대한 제품평가 실시	인증기관

※ 사후관리의 경우 시료의 크기를 $n = 1$ 로 한다.

6. 인증책임자는 사후관리 결과, 결함이 발견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의뢰자에게 「인증의 만료, 축소, 정지 또는 취소」 절차서 4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다음 각 호의 조치사항을 확인하여 처분을 해제하여야 한다.

1) 개선경고

- 「인증의 만료, 축소, 정지 또는 취소」 절차서 4.1에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조치증빙자료를 서면으로 확인하고 경미한 부적합으로 인한 처분의 경우 해당 항목에 대한 제품평가를 진행하여 적합한 경우에 해제한다.

2) 표시정지

- 「인증의 만료, 축소, 정지 또는 취소」 절차서 4.2에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조치증빙자료를 서면으로 확인하고 중대한 부적합으로 인한 처분의 경우 필요시 재현장평가를 포함하여 해당 항목에 대한 제품평가를 진행하여 적합한 경우에 해제한다.
- 인증책임자는 의뢰자가 제품, 제조공정에 대한 수정사항과 같이 KS Q ISO/IEC 17065의 7.10.3에서 인용하고 있는 모든 변경사항 또는 관련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품질시스템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통보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 인증책임자는 3.7에 의해 통보된 사항에 대하여 추가조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인증업체로 하여금 KOTIT에 별도의 통보 없이 변경사항이 적용된 인증제품을 방출할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